

고양 도시관리계획(화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5번지 일원의 고양 도시관리계획(화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 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8일
고양시장

- 도시관리계획(화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-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 - 2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 - 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 - 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- (1) 공공시설용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번호	면적(㎡)			획 지					비고
					획지 번호	위 치	면적(㎡)			
		기정	변경	변경후			기정	변경	변경후	
학교	2-4	10,384.9	감)10,384.9	-	104	화정동1005, 1007번지	10,384.9	감)10,384.9	-	폐지
업무 용지	2	-	증)3,160.9	3,160.9	104-1	화정동 1007번지	-	증)3,160.9	3,160.9	신설
종교 시설	4	-	증)7,224.0	7,224.0	104-2	화정동 1005번지	-	증)7,224.0	7,224.0	신설

(2) 공공시설용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번호	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2	업무용지	◦ 신설 -면적증가(3,160.9㎡)	◦ 학교시설 실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설정
4	종교시설	◦ 신설 -면적증가(7,224.0㎡)	◦ 학교시설 실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설정

5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가. 공공시설용지

● 기정

용도	도면번호	구분		계획내용
학교	2-4	용도	허용 용도	◦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의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
			건폐율	60% 이하
		규모	용적률	230% 이하
			높이	5층 이하

● 변경

용도	도면번호	구분		계획내용
업무 용지	2 (신설)	용도	허용 용도	◦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
			건폐율	60% 이하
		규모	용적률	230% 이하
			높이	5층 이하
종교 시설	4 (신설)	용도	허용 용도	◦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◦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중 어린이집 및 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※ 종교시설은 주용도로서 지상 연면적의 70% 이상이어야 함
			건폐율	60% 이하
		규모	용적률	230% 이하
			높이	5층 이하(최고 높이 28m 이하)

6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※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